

조직개편에 따른 금강대학교 제규정 개정(안) 심의서(신규대조표)

심의안건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1호	장학금 지급 규정	제4조(위원회 설치·구성) ②: 경영관리처장	제4조(위원회 설치·구성) ②: 기획관리처장 (별표1) 장학금 종류·자격·지급금액 금강인재장학금-천태금강장학금 A, B 유형으로 나누어 신설 : 입학 당시 만 50세 이상인 천태종 신자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장학금 전액 지급	
2호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2조(사무관장) 평의위원회의 사무는 전략혁신처에서 담당한다 제3조(구성) ③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	제2조(사무관장) 평의위원회의 사무는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에서 담당한다 제3조(구성) ③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	
3호	지관전 규정	제11조(자문위원) 원자	제11조(자문위원) 원장	
4호	자녀장학금 지급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2, 3호: 교육과학기술부	제3조(용어의 정의) 2, 3호: 교육부	
5호	자산관리 규정	(별표1) 사용책임자별 관리범위 정보지원센터장/정보지원센터	제7조(자산의 등록 및 말소)①~③ 제12조(재물조사) ① 제15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② 제16조(자산의 무단 사용 금지 등) 제19조(불용자산의 처리) → 띄어쓰기 수정 (별표1) 사용책임자별 관리범위 → 기획관리처장/정보지원팀 → 시설물 관리 규정과 통일 (별표5) 물품반납신청서 → 오기 수정	

심의안건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6호	시설물 관리 규정	<p><별표> 시설물 관리 구분의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 중 교무지원팀 관리운영팀 학생지원팀, 교학지원처장</p>	<p>제1조(목적) 제4조(관리책임자) ①-1 제4조(관리책임자) ②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 띄어쓰기 수정</p> <p>제5조(관리책임자의 의무) 3 → 오기 수정</p> <p>시설물 관리 구분 → 자산관리 규정과 통일</p> <p><별표> 시설물 관리 구분의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 중 교무지원팀 → 교학팀 관리운영팀 → 문헌정보팀 학생지원팀, 교학지원처장 → 기숙사, 총사감</p>	

심의안건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7호	재무회계 규정	제14조(예산안의 편성) ①, ②: 경영관리처장 제15조(예산안의 제출 및 예산공개)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18조(예산개요서 작성) ①: 경영관리처장 제26조(예산통제) ①: 경영관리처장 제27조(예산의 전용) ②: 전략혁신처장 제28조(예산이체): 경영관리처장 제29조(예비비 사용) ②: 경영관리처장 제33조(결산서의 제출 및 결산공개)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50조(지출의 관리와 총괄): 경영관리처장	제14조(예산안의 편성) ①, ②: 기획관리처장 제15조(예산안의 제출 및 예산공개) 예산 제출 기한 전까지 제18조(예산개요서 작성) ①: 기획관리처장 제26조(예산통제) ①: 기획관리처장 제27조(예산의 전용) ②: 기획관리처장 제28조(예산이체): 기획관리처장 제29조(예비비 사용) ②: 기획관리처장 제33조(결산서의 제출 및 결산공개) ①: 교육부장관 제50조(지출의 관리와 총괄): 경영관리처장 제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33조(결산서의 제출 및 결산공개) 제37조(회계원칙) 제39조(계정과목) ①, ② <별지 제8호 서식> 이월 사업 예산 요구서 → 띄어쓰기 수정 제42조(수납금의 내외구분)	
8호	외부공공시설 사용책임 지침	제9조(관리) ①: 학생지원처장 ②의 2: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⑤: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제9조(관리) ①: 교학지원처장 ②의 2: 교학지원처(교학팀) ⑤: 교학지원처(교학팀) 부칙 → 오타수정	
9호	내부감사 규정	제5조(감사의 주체) ①: 경영관리처, 경영관리처장 제8조(보고) ②: 경영관리처장	제5조(감사의 주체) ①: 기획관리처, 기획관리처장 제8조(보고) ②: 기획관리처장	

심의안건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10호	금강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제4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③: 부총장 ⑦: 전략혁신처 제4조의2(자체진단평가위원회) ③: 전략혁신처장 ⑦: 전략혁신처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③: 전략혁신처 팀장 ⑦: 전략혁신처 제8조(자체진단평가자문위원회) ③: 전략혁신처장 ④: 전략혁신처 팀장 ⑧: 전략혁신처 제10조(평가계획 수립) 전략혁신처는 매학년도 제15조(평가자료 제출): 전략혁신처 제16조(평가실시) ④: 전략혁신처	제4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③: 기획관리처장 ⑦: 기획관리처 제4조의2(자체진단평가위원회) ③: 기획관리처장 ⑦: 기획관리처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③: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장 ⑦: 기획관리처 제8조(자체진단평가자문위원회) ③: 기획관리처장 ④: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장 ⑧: 기획관리처 제10조(평가계획 수립) : 기획관리처는 제15조(평가자료 제출): 기획관리처 제16조(평가실시) ④: 기획관리처	
11호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업무처리): 전략혁신처	제10조(업무처리): 기획관리처	
12호	업무 인수인계 규정	제3조(인계·인수 관계자) ②의 4: 교무지원처장	제3조(인계·인수 관계자) ②의 4: 교학지원처장	
13호	기록물 관리 규정	제3조(정의)의 3: 각 학부(원)	제3조(정의)의 3: 각 학부(과) 및 전공 제41조(보존기간) 1항의 하 → 적체와 맞지 않는 직책 삭제	
14호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규정	제22조(구성) ②: 기획관리부처장, 교학지원부처장 로터스칼리지지원장	제22조(구성) ②: 기획관리부처장, 교학지원부처장 로터스칼리지지원장 → 삭제	

심의안건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15호	직원 인사 규정	제42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②경영관리처장	제42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② 경영관리처장 → 기획관리처장 제20조(파견) 1 → 자구 수정 제45조(연차유급휴가) ④ → 띄어쓰기 수정 부칙 → 오타 수정	
16호	연구원 임용 규정	제9-1조(재임용) ①의 1, 2, 3, 4: 교무지원처, 교무지원처장 ②의 2: 교무지원처장 ②의 5: 교무처장	제9조의1(재임용) ①의 1, 2, 3, 4: 교학지원처, 교학지원처장 ②의 2: 교학지원처장 ②의 5: 교학지원처장	
17호	객원교원 임용 규정	제5조(임용절차) ②: 교무지원처	제5조(임용절차) ②: 교학지원처	
18호	석좌교원 임용 규정	제5조(임용절차) ②: 교무지원처	제5조(임용절차) ②: 교학지원처	
19호	겸임교원 임용 규정	제6조(임용절차) ②: 교무지원처 제7조의 1(재계약을 위한 심사평정) ③: 교무지원팀 <별표1> 겸임교원 교육실적 심사평정 중 작성부서 : 교무지원팀	제6조(임용절차) ②: 교학지원처 제7조의 1(재계약을 위한 심사평정) ③: 교학지원팀 <별표1> 겸임교원 교육실적 심사평정 중 작성부서 : 교학팀	
20호	연구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6조(임용절차) ②: 교무지원처	제6조(임용절차) ②: 교학지원처	
21호	초빙교원 위촉 규정	제5조(임용절차 및 제한) ③교무지원처 제7조의 1(재계약을 위한 심사평정) ④교무지원팀 <별표1> 초빙교원 교육실적 심사평정 중 작성부서 : 교무지원팀	제5조(임용절차 및 제한) ③ 교학지원처 제7조의 1(재계약을 위한 심사평정) ④ 교학팀 <별표1> 초빙교원 교육실적 심사평정 중 작성부서 : 교학팀	
22호	교직원 유족 위로금 지급 규정	제3조(유족위로금 지급 심의위원회) ①: 교무지원처장	제3조(유족위로금 지급 심의위원회) ①: 교학지원처장	
23호	교직원 포상 규정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교무지원처장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교학지원처장	
24호	교원 성과급제 시행세칙	제4조(주관부서): 교무지원팀장	제4조(주관부서): 교학팀장	

심의안건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25호	외국어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	제9조(재임용을 위한 심사평정) ④: 교무지원팀 제10조(책임시수 등의 의무) ②: 교원책임시간및강의료지급지침 <별표1> 외국어강의전담교원 교육실적 심사평정 중 작성부서 : 교무지원팀	제9조(재임용을 위한 심사평정) ④: 교학팀 제10조(책임시수 등의 의무) ②: 교원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1> 외국어강의전담교원 교육실적 심사평정 중 작성부서 : 교학팀	
26호	제증명 발급 규정	제4조(발급명의) ①: 학생지원처장	제4조(발급명의) ①: 교학지원처장	
27호	졸업영어 시험 및 컴퓨터 시험 운영 지침	제5조(성적표 및 자격증 제출) : 교무지원팀	제5조(성적표 및 자격증 제출) : 교학팀	
28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관련 경비 지원 지침	2. 지원내용 나. 국내외 학술회의(언론출연 포함) 3) 교무지원팀	2. 지원내용 나. 국내외 학술회의(언론출연 포함) 3) 교학팀	
29호	이승은 장학금 운영 규정	제4조(장학생선발위원회) ②: 학생지원처장, 불교학부장 제9조(장학생 확정 및 공고) : 학생지원처장 제11조(장학관리) :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제4조(장학생선발위원회) ②: 교학지원처장, 학부장 제9조(장학생 확정 및 공고) : 교학지원처장 제11조(장학관리) : 교학지원처 교학팀	
30호	학생심리 진로지원 프로그램 환류를 위한 업무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3, 4: 취업지원센터	제2조(용어의 정의) 3, 4: 취창업지원센터	
31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구성): 전략혁신처장 제6조(사무관장): 전략혁신처	제2조(구성): 기획관리처장 제6조(사무관장):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32호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4조(운영) ①: 전략혁신처 ⑥: 전략혁신처장	제4조(운영) ①: 기획관리처 ⑥: 기획관리처장	
33호	성과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주관부서 및 업무) ①: 전략혁신처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전략혁신처장	제4조(주관부서 및 업무) ①: 기획관리처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기획관리처장	
34호	보건소 규정	제6조(운영위원회) ②: 학생지원팀장	제6조(운영위원회) ②: 교학팀장	
35호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제25조(예산 및 결산) : 예산 회계 업무 규정	제25조(예산 및 결산) : 재무회계 규정	

심의안건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36호	금강대학교 사회봉사 규정	제5조(계획) ①: 대외협력팀 제6조(결과보고/점검/활용) ①: 대외협력팀 ②: 대외협력팀 제8조(구성) ③: 대외협력팀	제5조(계획) ①: 사회봉사센터 제6조(결과보고/점검/활용) ①: 사회봉사센터 ②: 사회봉사센터 제8조(구성) ③: 사회봉사센터	
37호	금강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③의 가: 기획관리부처장, 교학지원부처장, 교무지원팀장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③의 가: 교학팀장	
38호	소수집단 및 장애학생 지원 규정	제4조(위원회 설치 . 구성) ②: 학생지원팀장 제7조(업무) ①: 학생지원팀 제11조(후속조치) : 학생지원팀	제4조(위원회 설치 . 구성) ②: 교학팀장 제7조(업무) ①: 교학팀 제11조(후속조치) : 교학팀	
39호	지역사회 협력 · 기여 운영 규정	제3조(부서) ①: 전략혁신처 ②의 <표1: 지역사회 협력 · 기여 활동표> 중 관련 부서 : 전략혁신처, 경영관리처 제9조(업무개선) : 전략혁신처장	제3조(부서) ①: 기획관리처 ②의 <표1: 지역사회 협력 · 기여 활동표> 중 관련 부서 : 기획관리처 제9조(업무개선) : 기획관리처장	
40호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제6조(확인부서 및 조사부서) : 경영관리처	제6조(확인부서 및 조사부서) :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 띄어쓰기 수정	